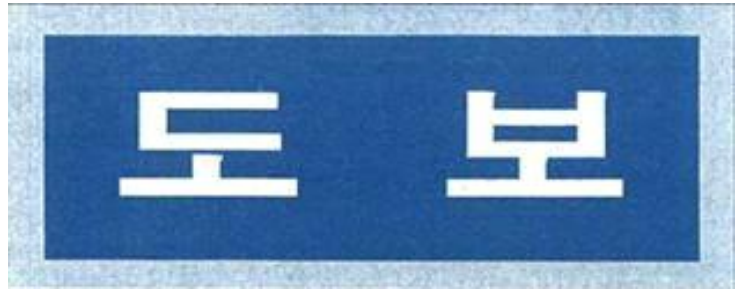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784호 2021. 3. 19.(금)

www.jeonbuk.go.kr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158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전라북도 규칙 제3159호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9
- 전라북도 규칙 제3160호 전라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14
- 전라북도 규칙 제3161호 전라북도 기록관 운영규칙 폐지규칙 29
- 전라북도 규칙 제3162호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78호 전라북도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31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57호 2021년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32
- 전라북도 고시 제2021-60호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34
- 전라북도 고시 제2021-63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고시 36
- 전라북도 고시 제2021-6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37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495호 공인 폐기 공고 3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49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9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0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 40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1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41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1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42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43

회람									
-----------	--	--	--	--	--	--	--	--	--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5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4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4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8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4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9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등록 공고 47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3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4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3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49
-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3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50
-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4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52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3. 15.(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54

시군행정

- 익산시 공고 제2021-758호 도시계획시설(소로3류7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55
- 남원시 고시 제2021-41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57
- 남원시 공고 제2021-578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59
- 김제시 고시 제2021-29호 도시계획시설(중로1-17호선 개설공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61
- 완주군 고시 제2021-27호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65
- 임실군 고시 제2021-35호 군계획시설(봉황공원,사선대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66
- 고창군 고시 제2021-38호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76

기 타

- 전라북도 덕진소방서 공고 제2021-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 송달 82
- 원광여자중학교 공고 제2021-9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86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58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라북도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제3조 관련)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근거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자치행정과	전라북도 서울·전주장학숙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촌활력과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운영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문학관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관광총괄과	전북투어패스 운영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체육정책과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문화유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연생태과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운영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법
여성 청소년과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근거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운영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복지과	도립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보호작업장 운영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운영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운영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과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정책관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	고용정책 기본법
	소상공인희망센터 관리·운영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고용정책 기본법
기업지원과	전라북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지원사업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신재생에너지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지원시설 민간위탁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공통	기타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와 일회성사무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 도지사 결재를 받은 사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전라북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란 -----을 말한다.
- 2.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 가.
 - 나.
-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가. 시설 : 전라북도 ○○시 ○○구 ○○○로 △△-△△
 - 나. 부대시설 :
 - 다. 주요장비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위탁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협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의 운영관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운영 보조금을 1년차는 금-----원(원), 2년차는 금-----원(원), 3년차는 금-----원(원)으로 한다. 단, 명시된 보조금은 위탁관리에 대가가 아닌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이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금 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물품 구입 등 민간위탁금 집행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감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휘·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지휘·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법령(「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공증) ① “수탁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증을 받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증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체결을 무효로 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지사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59호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소송의 제기”를 “소송사무의 처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송대리인”을 “각 심급별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서약서를 징구해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서약서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률지식을 요하거”를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하고, 지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소송심의회 설치)”를 “(소송심의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송심의회”를 “전라북도 소송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중요사건 지정
2.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특례적용
3. 소송사건 중 화해 및 조정, 상소 제기·포기 등 중요사항
4. 소송수행해태 등의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5.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 중 소장 또는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소

명자료 등을 통해 소송대리 업무 등을 착수한 것이 입증되면 약정된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소송의 고지)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해 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매 회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소송진행상황보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해임,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反訴)·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탈퇴
2.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의 단서 및 제394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을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했거나 이들이 송달되었을 때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판결·결정·명령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 요지를 판결·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 일자를 기재하여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⑧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포기)의견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⑩ 소송수행자는 불변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 없이 불변기간이 지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수행해태보고를 해야 한다.

⑪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⑫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관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본안 또는 신청사건 등의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당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검사장의 지휘·보고)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8항·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장에게 소송 진행상황 및 재판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집행에 의하여 이를 회수해야”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로, “지방세법 징수절차에 의한다”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관련 절차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송심의회 심

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에 따른 소송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후단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6장(제17조 및 제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소송문서의 관리 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체소·응소·상소·반소 등의 소송 수행 계획 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정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송문서 등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 법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제3항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승소사례금	비고
	내 용	착 수 금		
민사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나. 기타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내 20만원 이내 4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 소가 5,000만원 미만 사건은 계약에 의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화해 성립 소 취하의 경우 당해 소송 착수금의 1/2 지급하되, 소 취하는 1회 이상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 한함 - 조건부 취하, 인낙, 피고정정 사전판단에 승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등은 미지급 	특례 적용 가능
	2. 본안사건 (당초 소장 소송물가액 기준) 가. 5,000만원 미만 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350만원 이내 450만원 이내		
	3. 중요사건 가. 10억원 미만으로써 소송수행의 결과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다. 30억원 이상	500만원 이내 7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4. 상소심 및 환송심 (소송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본안사건의 1/2		
기타 비용	1. 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료 : 실액 2.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3. 복사료 등 기타 비용 : 실액			신규 선임시 100%

- ※ 1.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10% 추가 지급
2. 소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표의 지급기준과 사건의 경중을 참작하여 지급

※ 특례적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기준 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도의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건
2. 전복 이외의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지급기준에 규정한 착수금 등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건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60호

전라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전라북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라북도 안전정책관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지사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감찰 활동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하여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 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및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관 중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감찰관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

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3.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4.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답변요구 및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전라북도 청내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기준)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속 기관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도지사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대해 따로 정한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고,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회)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담당부서의 장, 안전감찰관 및 안전분야 관계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심의회)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재심의심의회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법 제77조의2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회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의 효력) 도지사는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횡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이행실태) 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유지) ①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감찰 역량강화

제21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안전정책관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정책관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정책관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정책관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정책관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전 감 찰 통 지 서(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감찰명	
감찰기간	
감찰대상	
감찰반	

주요 감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위 감찰에 대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방 또는 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제 목】

【내 용】

【확인자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급 ○○○ (인)

입회자 :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급 ○○○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처 분 요 구 서 (제14조제1항 관련)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현지조치, 고발)

【제 목】

【소 관 청】

【관계기관】

【내 용】

210mm×297mm(떡상지(80g/㎡) 또는 종집지(80g/㎡))

[별지 제6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직 명	
	주 소 (기관의 소재지)			
2. 안전감찰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안전감찰결과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안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전라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중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안내서(제17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안전감찰 결과 처분이전**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조·구조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절차를 거쳤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및 회피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연책 신청서 (제17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적극행정연책 신청 요지		
연책 요건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추정)여부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 여부		
5)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자료 및 정보의 충분한 검토 여부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 업무처리를 위한 보고 여부		
연책 대상 제외 여부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고의 불이행, 지연 등 여부		
2) 금품수수 또는 권의제공을 받았는지 여부		
3)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 본질적인 사항 위배 여부		
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여부		
5)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연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210mm×297mm(박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기록관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61호

전라북도 기록관 운영규칙 폐지규칙

전라북도 기록관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62호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의 위기탈출 체험동 중 “만 9세”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훈령 제1778호

전라북도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전라북도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57호

2021년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명 : 2021년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13개 시·군 지적소관청
 -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3. 사업기간 : '21. 3. ~ '22. 12월
4. 사업위치 : 붙임 참조
5. 필지 및 면적 : 13개 시·군, 42개지구, 30,398필지(16,728천㎡)
 - 붙임 참조
6. 관리청 : 전라북도(토지정보과)
7. 토지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및 해당 사업지구 지적소관청에 비치
8. 기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2021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현황

시·군	사업지구명	필지	면적(㎡)	
13시군	42개지구	30,398	16,728,303	
군산시	성산고봉지구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9-1번지 일원	1,707	1,113,893
익산시	소 계		2,069	1,042,616
	황등1지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3-11번지 일원	504	136,560
	황등2지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29-1번지 일원	630	200,885
	계성1지구	익산시 옹포면 계성리 546번지 일원	344	199,826
	계성2지구	익산시 옹포면 계성리 123번지 일원	105	161,181
	호산지구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71번지 일원	486	344,164
정읍시	소 계		4,347	1,485,605
	신태인3지구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55-4번지 일원	1,567	429,749
	덕안2지구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6-8번지 일원	255	377,124
	시기1지구	정읍시 시기동 185번지 일원	885	157,745
	연지3·6지구	정읍시 연지동 1-1번지 일원	1,640	520,987
남원시	소 계		7,054	4,359,598
	내송지구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130번지 일원	343	173,593
	안계두곡지구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65-1번지 일원	570	256,100
	주생지구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66-8번지 일원	5,104	3,350,837.8
	남계지구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56번지 일원	442	186,519.3
	백일지구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728번지 일원	595	392,548
김제시	소 계		3,086	997,810
	신평지구	김제시 신평동 13-169번지 일원	778	246,014
	교동1지구	김제시 교동 293-9번지 일원	925	317,938
	요촌8지구	김제시 요촌동 48-7번지 일원	762	236,872
	접주지구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453번지 일원	621	196,986
완주군	소 계		1,170	867,325
	상삼지구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705번지 일원	760	530,938
	잠평지구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119번지 일원	410	336,387
진안군	소 계		2,188	1,558,817
	군하3지구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1-3번지 일원	473	185,383
	주평지구	진안군 상진면 주평리 50번지 일원	296	213,110
	봉학1지구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91번지 일원	638	442,624
	갈용1지구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962-2번지 일원	781	717,700
무주군	치목지구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1064-1번지 일원	628	409,007
장수군	소 계		2,816	1,367,008
	산서동화1지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5번지 일원	944	376,386
	산서동화2지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608번지 일원	183	58,470
	학선지구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 12-1번지 일원	606	317,549
	노단1지구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1077-1번지 일원	473	120,293
	노단2지구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165번지 일원	610	494,310
임실군	오수지구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51-4번지 일원	1,457	493,924
순창군	소 계		2,015	1,692,760
	반월지구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136번지 일원	1,016	775,603
	매우지구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136-3번지 일원	999	917,157
고창군	매산지구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54-1번지 일원	955	689,327
부안군	소 계		906	650,613
	서외1지구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55-15번지 일원	44	48,662
	봉덕1지구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4-13번지 일원	44	10,246
	마포지구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622-2번지 일원	151	251,475
	구진지구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78번지 일원	91	37,639
	운호지구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108-1번지 일원	175	83,065
	운호1지구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53번지 일원	198	143,420
	용계지구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91-1번지 일원	203	76,106

전라북도 고시 제2021-60호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고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10537(2017.10.20)호로 승인되고, 전라북도 고시 제 2017-210(2017.10.27.)호로 승인 고시한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사업명 :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2. 위치 : 전북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라성리, 상하면 장호리 일원
3. 목적 :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확보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4. 수혜면적 : 207.1ha
5. 사업개요
 - 저수지 준설(총저수량 236천 m^3 →657천 m^3)
 - 양수장 1개소(1단 55kw×250kw×250mm×250mm×2대)
 - 송수관로 2조 1.61km, 용수로 5조 10.64km
6. 사업기간 : 2017.11.20. ~ 2021. 12. 20
7. 총 사업비 : 17,22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 분	관계인		
	시	면	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창	해리	라성	753-2	753-6	답	276.0	13.0	이용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80, 2동1005호(불광동,미성아파트)	1/1	이종백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61번길 36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이종흠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792,109동 304호(당진신평 LIG리가아파트)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2	고창	해리	라성	754-2	754-6	답	843.0	119.0	이용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80, 2동1005호(불광동,미성아파트)	1/1	이종백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61번길 36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이종흠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792,109동 304호(당진신평 LIG리가아파트)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3	고창	해리	라성	762-2	762-7	답	2,018.0	73.0	이용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80, 2동1005호(불광동,미성아파트)	1/1	이종백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61번길 36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이종흠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792,109동 304호(당진신평 LIG리가아파트)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전라북도 고시 제2021-63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동 변경 결정 도서 사본을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김제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8	서암공원	근린공원	김제시 서암동 산21-1번지 일원	10,376	감)10,376	-	전북제171호 (93.6.14)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서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폐지 면적 : 10,3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제배수지 신설을 위하여 동일 위치에 기 결정된 서암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전라북도 고시 제2021-6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익산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익산시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 분	농업진흥지역			비 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라북도	135,909.5	117,495.7	18,413.8	- 진흥 : △3.9	- 보호 :
익 산 시	16,562.8	15,543.6	1,019.2	- 진흥 : △3.9	- 보호 :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해제 사유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승마장]) 실시계획 인가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2-7번지 일원)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39,061㎡ 해제

3. 농업진흥지역 도면(1/5,000) 및 토지조서는 익산시에 각각 보관한다.

4.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495호


공인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폐기 사유 : 회계관직 관인 중복에 따른 폐기
- 2. 공인의 폐기일 : 2021년 3월 11일
-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세정과	전라북도세입징수관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1-49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14호	유한회사 이에스제이 대표 임학현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4-12, (남중동)	2021.03.11.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50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 공 고 사 항

1. 등록번호 : 제2021-2호
 2. 모 집 자 : 익산문화원
 3. 모집목적 : 익산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시민의 종을 제작하여 세계 유산의 도시 익산을 홍보하고 백제왕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하기 위함
 4. 모집목표액(변경) : 금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
 5. 모집금품 : 현금
 6. 모집기간(변경) : 2020. 7. 1. ~ 2022. 12. 31.
 7. 사용기간(변경) : 2020. 7. 1. ~ 2022. 12. 31.
 8. 모집지역 : 전국
 9.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등
- * 사무실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선화로 529

전라북도 공고 제2021-51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단체명칭 :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2. 변경등록 내용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소재지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1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구암길 65

3. 주된 사업

-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
- 평생교육에 관한 주민의 평생학습 운영
- 평생학습에 관한 지역 교육단체 및 기관 간의 연계사업 추진
-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홍보 및 출판
-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평생학습 운영
-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전라북도 공고 제2021-51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단체의 명칭 :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조두호(790813)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51-8, 101호
4. 주된 사업 : 찾아가는 문화활동 개최
분기별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기획
협주곡의 밤 추진
완주군 지역행사 및 다양한 행사 참여 등
5. 등록연월일 : 2021. 3. 15.

1. 단체의 명칭 :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 김양옥(530213)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4. 주된 사업 : 장애인관련 문화예술 공연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지원
장애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장애인 문화예술공연 및 세미나
장애인 문화예술 이벤트 등
5. 등록연월일 : 2021. 3. 15.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단체명칭 : KACE 전주
2. 변경등록 내용

변경사항	당초	변경
대표자	최용근	임지현

3. 주된 사업

○ 건강한 가정, 즐거운 학교, 활기찬 지역만들기 위한 평생교육 제반사업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5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9.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5-1-전라북도-19호
2. 단체명칭 :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3.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천 경 옥
 - 생 년 월 일 : 1964. 09. 15
 - 주 소 : 전북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545-2
5. 주된 사업
 - 여성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교류증진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신영자	천경옥	

7. 허가(변경)일자 : 2021. 3. 15.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9.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3-1-전라북도 - 32호
2. 단체명칭 :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3. 소재지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7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위 중 량
 - 생 년 월 일 : 1971. 08. 22.
 - 주 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67
5. 주된 사업
 - 지역 새마을운동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생명살림,평화나눔,공경문화운동)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김 중 수 (1965.08.29.)	위 중 량 (1971.08.22.)	

7. 허가(변경)일자 : 2021. 3. 16.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8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 공 고 사 항

허가번호	허가일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
제2021-18호	2021. 3. 16	사단법인 라엘 (김기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29, 4층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9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대표자)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단체의 명칭 : 한국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 (당초) 정미숙 → (변경) 심명순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4. 주된 사업 : 농촌여성 지위 및 권익향상,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농촌지역 사회 발전 도모 등
5. 최초등록연월일 : 2013. 6. 4.

전라북도 공고 제2021-53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15호	유한회사 엘파워닉스 대표 김현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21 (진북동)	2021.03.17.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53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3월 19일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42호
2. 단체명칭 : (사)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3.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2
4. 대표자
 - 성 명 : 김성곤
 - 생년월일 : 1966. 10. 19.
 - 주 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부흥길 17
5. 주된 사업
 - 농업인 권익신장 및 친목 도모
 - 영농의 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 농민들의 여론 파악 및 정책 건의
6.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변경전 : 최연주(1962. 08. 26)
 - 변경후 : 김성곤(1966. 10. 19.)
7. 허가(변경)일자 : 2021. 3. 1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3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장
2021년 3월 19일

□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전라북도의회	직위(직급)	도의원	성 명	김기영
-----	--------	--------	-----	-----	-----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김기영 (본인)	박셀바이오	47	매각	6,674	'21.3.3.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제넨바이오	822	매각	1,479	'21.3.3.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종근당	39	매각	6,552	'21.3.3.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현대 그린푸드	6,000	매각	54,780	'21.2.26.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엠브레인	5	매각	40	'21.2.25.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POSCO	18	매각	4,932	'21.2.25.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현대차	1,000	매각	246,500	'21.2.25.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크리스탈 지노믹스	970	매각	13,968	'21.2.2.	NH투자증권
김기영 (본인)	일신바이오	1,782	매각	14,879	'21.1.25.	NH투자증권
김태경 (딸)	삼양사	150	매각	9,540	'21.2.2.	한국투자 증권(주)
김태연 (딸)	사조동아원	8,641	매각	9,461	'21.2.2.	한국투자 증권(주)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4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장
2021년 3월 19일

□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전라북도의회	직위(직급)	도의원	성 명	홍성임
-----	--------	--------	-----	-----	-----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홍성임 (본인)	셀트리온	5	매각	1,802	'21.2.4	NH투자증권
홍성임 (본인)	SK 이노베이션	10	매각	3,105	'21.2.4	NH투자증권
홍성임 (본인)	화신	300	매각	1,692	'21.2.5	NH투자증권
홍성임 (본인)	현대바이오	30	매각	862	'21.2.5	NH투자증권
홍성임 (본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100	매각	4,568	'21.2.16	NH투자증권
홍성임 (본인)	기아차	100	매각	9,850	'21.2.9	NH투자증권

홍성임 (본인)	유니슨	700	매각	3,416	'21.2.10	NH투자증권
김홍곤 (배우자)	바이넥스	890	매각	23,629	'21.1.21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김홍곤 (배우자)	NPC	600	매각	2,217	'21.1.29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김홍곤 (배우자)	태평양물산	988	매각	2,094	'21.1.26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김홍곤 (배우자)	아진산업	13	매각	47	'21.1.27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김홍곤 (배우자)	SFA반도체	4,700	매각	37,271	'21.1.28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김홍곤 (배우자)	디와이	107	매각	612	'21.1.29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3. 15.(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1-33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철저	<p>○ 정부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4차 재난지원금이 도민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창구 운영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 협조 : 사회복지과)</p>
2021-34	홍수기 대비 하천시설물 정부합동점검 대응 철저	<p>○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홍수기 대비 국토부 주관 합동 점검시 하천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면밀히 추진하고, 특히 수해 원인조사(환경부, 용역)가 진행 중인 댐(삼진강·용담댐)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등 조사용역 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공항하천과 / 협조 :)</p>
2021-35	임대형 캠핑농장(가칭) 도입 검토	<p>○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외에서의 캠핑·여가 수요가 증가 됨에 따라 최근 주말농장과 캠핑 기능을 합친 ‘임대형 캠핑농장(가칭)’조성으로 도시민에게 생태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촌 체류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농촌활력과 / 협조 :)</p>
	당면·현안업무	<p>○ 공직자로서 공심(公心) 확립</p> <p>-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는 때이므로, 공심(公心)의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 / 협조 :)</p>
	당면·현안업무	<p>○ 코로나 19 대응 철저</p> <p>-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느슨해지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해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언론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p> <p>- (백신접종) 화이자, AZ 등 백신 종류에 따른 취급·보관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접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p> <p>- (요양병원 면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3.9)됨에 따라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와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사회재난과, 예방접종시행추진단, 보건의료과)</p>

익산시 공고 제2021-758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소로3류7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3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379-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72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송학동 영무예다음 2차 아파트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L = 103.3m, B = 6.1~6.9m, A = 683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 영무건설 대표 박재홍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8.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계도서 : "계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806	683					
1	송학동	379-14	도	341	341	기획재정부				
2	송학동	380-12	답	76	76	박 동순	익산시 중앙동 2가 35			
3	송학동	380-14	도	114	114	유 금례	익산시 중앙동 3가 153			
4	송학동	380-9	답	63	63	박 동순	익산시 중앙동2가 35			
5	송학동	508-3	답	3	3	기획재정부				
						학곤마을새마을자치회	익산시 송학동 448-3			
6	송학동	509-4	도	82	26	박 소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69번길 51,318/1304(풍무동, 당곡마을)			
						박 윤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북문길 22-18, 206호 (태산2차아파트)			
						박 정주	익산시 무왕로22길 43, 101/801(어양동, 우미아파트)			
						박 윤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08, 105/103 (월곡동, 한성아파트)			
7	송학동	509-3	전	84	23	박 소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69번길 51,318/1304(풍무동, 당곡마을)			
						박 윤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북문길 22-18, 206호 (태산2차아파트)			
						박 정주	익산시 무왕로22길 43, 101/801(어양동, 우미아파트)			
						박 윤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08, 105/103 (월곡동, 한성아파트)			
8	송학동	878-63	도	43	37	국토교통부				

남원시 고시 제2021-41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인 『남원 수학체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3월 19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수학체험센터 신축공사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어현동 40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6,5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전라북도교육감
 - 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구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남원시	어현	400	답	791	71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2	남원시	어현	401	답	2,608	2,569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3	남원시	어현	402-1	답	3,078	3,078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4	남원시	어현	산93	임	1,831	42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5	남원시	어현	398	전	82	1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6	남원시	어현	산93-2	임	112	1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7	남원시	어현	724	구	30,729	95		국 (농림축산식 품부)			
소 계					39,231	6,533					

남원시 공고 제2021-57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짚와이어 도착지)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인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3월 19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짚와이어 도착지)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쌍교동 26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721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관광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030	721	-	-	-	-	-	-
1	쌍교동	342	도	545	65	국(건설부)	-				
2	쌍교동	276	대	255	255	남원시	-				
3	쌍교동	296	도	89	7	박*호	남원읍 죽*리 1*4				
4	쌍교동	297	대	122	122	남원시	-				
5	쌍교동	298	도	36	36	김*숙	남원읍 천*리 2*				
6	쌍교동	301	도	50	50	박*서	천거리				
7	쌍교동	334	도	3	3	김**달	남원읍 천거리 1*7				
8	쌍교동	335	도	36	36	남원시	-				
9	쌍교동	337	대	116	116	이*우	남원읍 천*리 33*				
10	쌍교동	338	대	7	7	윤*호	남원읍 천*리 3*				
11	쌍교동	339	도	771	24	남원시	-				

□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사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 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단위	성명또는명칭	주소	
1	쌍교동	276	대	주택	목조/기와	39.3	㎡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주택	목조/기와	27.1	㎡			
				주택	목조/세와	11.6	㎡			
2	쌍교동	297	대	주택	목조	40.05	㎡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주택 및 점포	세멘트블럭조	29.13	㎡			
				주택	세멘트블럭조 /스레트	11	㎡			
3	쌍교동	337	대	다방	철근콘크리트	85.87	㎡	이*우	남원시 쌍*동 3**	
				점포	철근콘크리트	64.67	㎡			
				주택	철근콘크리트	64.67	㎡			
				화장실	시멘트블럭조 /스라브	1	㎡			

김제시 고시 제2021-29호

김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김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1년 3월 19일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가. 위 치 : 김제시 검산동 50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김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중로1-17호선)
 - 나. 명 칭 : 김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4,020.7㎡(L=177.2m, B=20~28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변창흠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17. 6. 30.
 - 나. 준공예정일 : 2021. 6.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도서 : “계재생략”. 끝.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 토지 편입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시	동	지 번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중로1-17호			계		11,568.0	4,020.7					
1	김제	검산	504-5	답	140.0	140.0	신평동 84-9	신정자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2			505-3	답	1,287.0	1,022.0	전북진주시완산구소태정4 길 23 (효자동2가)	이미정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북진주시완산구세대로 239, 108동501호(효자동2가, 더샵 효자아파트)	황동춘			
							전북진주시완산구세대로23 9, 108동501호(효자동2가, 더샵 효자아파트)	이영임			
			506-1	답	722.0	232.0	경기도화성시마도면석교리 448-5	(주)무진 종합건설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4			506-12	답	5.0	5.0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20 60, 부영아파트 106-609	안연희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20 64, 세원한아름아파트 105-1003	김길복			
							충북청주시흥덕구신봉동 310, 삼정백조아파트 107-1001	원종순			
							대전광역시서구변동 67-33	한석춘			
							충북괴산군청천면청천리 12	송경자			
							충북괴산군괴산읍서부리 207	최옥순			
							충북괴산군괴산읍서부리 256, 송천아파트 101-404	이명주			
							충북청주시흥덕구분평동12 02, 분평주공아파트 202-1703	김용태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227-2, 현대아파트 101-903	송인선			
							충북청주시흥덕구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아파트110- 1005	변정일			
충북청주시흥덕구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211- 1105	이창우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시	동	지 번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5			506-13	답	206.0	206.0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 아이 파크 102-1104	김 상 남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6			507	답	341.0	341.0	충북청주시상당구내 덕동60-1, 롯데삼성아파트C-507	김 분 례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청주시상당구사 천동229-1, 신동아아파트 10-1406	이 영 주								
	충북청주시흥덕구가 경동1550, 가경주공2단지아파트 202- 102	서 윤								
	충북청원군남이면상 발리46-3	장 혜 숙								
							충북괴산군청명칭 천리 12	송 경 자		
7			507-2	답	251.0	119.0	충북청주시상당구내 덕동60-1, 롯데삼성아파트 C-507	김 분 례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8			507-6	답	70.0	70.0	서울시동작구대방동5 03,대방2단지주공아파 트 207-1301	안 종 대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9			510-15	전	2,438.0	693.7	김제시서암동380	김 환 석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용산구보광동 265-508	김 학 규								
	김제시검산동 510	김 영 철								
	전남장성군황룡면필 암리 343	김 부 자								
	김제시동서12길 10(요촌동)	이 금 순								
	김제시동서12길 10(요촌동)	김 태 규								
김제시동서12길 10(요촌동)	김 태 곤									
10			525-1	전	2,275.0	367.8	전북전주시완산구삼 천동1가 705-5, 우성아파트 107동 803호	강 덕 규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536-2	답	1,685.0	0.2	전북전주시완산구소 태정4길 23 (효자동2가)	이 미 정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북전주시완산구세 내로239, 108동501호(효자동2가 더샵 효자아파트)	황 동 준								
	전북전주시완산구세 내로239, 108동501호(효자동2가 더샵 효자아파트)	이 영 임								
							전북전주시덕진구떡 전2길13, 201호(떡진동1가,남성 아파트)	최 흥 순		

12			536-14	답	837.0	740.0	전북진주시완산구세태정4길 23 (효자동2가)	이 미 정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북진주시완산구세내로239, 108동501호 (효자동2가,더샵 효자아파트)	황 동 춘		
							전북진주시완산구세내로239, 108동501호 (효자동2가,더샵 효자아파트)	이 영 임		
							전북진주시덕진구떡전2길13, 201호(떡진동1가,남 성아파트)	최 흥 순		
13			945-6	도	712.0	84.0	국(건설부)	국 (건설부)	경남 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완주군 고시 제2021-27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1년 3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7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명 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병·해충 저항성 평가 검정 온실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1,721,748.4㎡
(대지면적 : A블럭: 352,374.9㎡, B블럭: 159,774.1㎡, C블럭: 28,321.2㎡)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기정	변경	계	기정	변경		
합계	55,032.47	53,843.5	1,218.40	74,738.64	73,520.24	1,218.40		
A블럭	소계	46,265.19	45,046.79	1,218.40	65,972.88	64,754.48	1,218.40	
	주1, 부1~36	45,046.79	45,046.79	-	64,754.48	64,754.48	-	기정
	부37	1,218.40	-	1,218.40	1,218.40	-	1,218.40	인가신청
B블럭	소계	8,629.76	8,659.19	-	8,629.76	8,629.76	-	
	주1, 부1~14	8,629.76	8,659.19	-	8,629.76	8,629.76	-	기정
C블럭	소계	137.52	137.52	-	136.00	136.00	-	
	주1	137.52	137.52	-	136.00	136.00	-	기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임실군 고시 제2021-35호

임실 군계획시설(봉황공원, 사선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임실 군계획시설(봉황공원, 사선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03. 19.
임 실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봉황공원	근린공원	임실읍 이도리 924-1 일원	174,478	전라북도 고시 제267호 (1973.6.29.)	임실군 고시 제2020-69호 (2020. 7. 1.) 최종변경
기정	1	사선대공원	근린공원	관촌면 덕천리 705-15 일원	99,164	전라북도 고시 제74호 (1977.04.18.)	임실군 고시 제2020-69호 (2020. 7. 1.) 최종변경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봉황공원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62,743	감)788,265	174,478	288	감)228	60	288	감)228	60	
도로	18,333	감)15,135	3,198							
광장	1,492	감)1,240	252							
조경시설	58	감)58	-							
휴양시설	16,379	감)15,873	506	144	감)144	-	144	감)144	-	
운동시설	2,915	감)2,705	210							
교양시설	6,140	감)5,947	193							
편익시설	860	감)737	123	60	감)35	25	60	감)35	25	
공원관리시설	120	감)76	44	84	감)49	35	84	감)49	35	
녹지	916,446	감)746,494	169,952							

나. 사선대공원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4,200	감)95,036	99,164	210	감)160	50	210	감)160	50	
도로	11,689	감)2,952	8,737							
광장	3,168	-	3,168							
조경시설	1,943	감)325	1,618							
휴양시설	3,927	감)2,892	1,035							
운동시설	581	감)581	-							
교양시설	15,735	감)1,160	14,575	160	감)160	-	160	감)160	-	
편익시설	618	-	618	50	-	50	50	-	50	
유희시설	1,642	감)1,642	-							
녹지	154,897	감)85,484	69,413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봉황공원

시설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바닥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962,743	감)788,265	174,478	288	감)228	60	288	감)228	60	
도로 및 광장	소계			19,825	감)16,375	3,450							
		도로	도로	18,333	감)15,135	3,198							
	1	진입광장	-	1,492	감)1,492	-							
	1-1	휴게광장	광장	-	증)126	126							
	1-2	휴게광장	광장	-	증)126	126							
조경 시설	소계			58	감)58	-							
	2	정자	-	22	감)22	-							
	3-1	파고라	-	18	감)18	-							
	3-2	파고라	-	18	감)18	-							
휴양 시설	소계			16,379	감)15,783	506	144	감)144	-	144	감)144	-	
	4	피크닉장	야유회장	6,829	감)6,684	145							피크닉장
	5-1	휴게공간	휴게소	790	감)621	169							
	5-2	휴게공간	-	2,410	감)2,410	-	72	감)72	-	72	감)72	-	
	5-3	휴게공간	-	1,010	감)1,010	-							
	5-4	휴게공간	-	1,070	감)1,070	-							
	5-5	휴게공간	-	470	감)470	-							
	5-6	휴게공간	-	440	감)440	-							
	5-7	휴게공간	-	1,500	감)1,500	-							
	5-8	휴게공간	휴게소	880	감)863	17	72	감)72	-	72	감)72	-	
	5-9	휴게공간	-	780	감)780	-							
	5-10	휴게공간	-	54	감)54	-							
	5-11	휴게공간	-	146	감)146	-							
5-12	-	휴게소	-	증)175	175							숲속의집	

시설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건축면적			바닥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 시설	소계		2,915	감)2,705	210								
	6-1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장	2,004	감)1,809	195							
	6-2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장	211	감)196	15							
	7	심신수련장	-	700	감)700	-							
교양 시설	소계		6,140	감)5,947	193								
	8	자연학습장	-	4,060	감)4,060	-							
	8-1	-	공연장	-	증)193	193							숲속 음악회
	9	조양정	-	1,020	감)1,020	-							
	10	운일정	-	680	감)680	-							
	11	층훈탑	-	380	감)380	-							
편의 시설	소계		860	감)737	123	60	감)35	25	60	감)35	25		
	12-1	화장실	화장실	800	감)766	34	20	증)5	25	20	증)5	25	
	12-2	화장실	-	30	감)30	-	20	감)20	-	20	감)20	-	
	12-3	화장실	-	30	감)30	-	20	감)20	-	20	감)20	-	
	12-4	-	전망대	-	증)89	89							
공원 관리 시설	소계		120	감)76	44	84	감)49	35	84	감)49	35		
	13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120	감)76	44	84	감)49	35	84	감)49	35	
	14	종합안내관	표지										종합안내관 2기
	15	방향안내관	표지										방향안내관 9→2기
녹지	18	가로등	조명시설										가로등 5기 신설
	소계		916,446	감)746,494	169,952								
녹지		916,446	감)746,494	169,952									

나. 사선대공원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바닥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4,200	감)95,036	99,164	210	감)160	50	210	감)160	50	
도로 및 광장	소계			14,857	감)2,952	11,905							
	-	도로	도로	11,689	감)2,952	8,737							
	1-1	진입광장	광장	2,773	-	2,773							
	1-2	광장	광장	225	-	225							
	1-3	광장	광장	170	-	170							
조경 시설	소계			1,943	감)325	1,618							
	2-1	잔디밭	잔디밭	560	-	560							
	2-2	잔디밭	잔디밭	39	-	39							
	3-1	화단	화단	196	-	196							
	3-2	화단	화단	354	-	354							
	3-3	화단	화단	282	-	282							
	3-4	화단	화단	139	-	139							
	4-1	테크쉼터	-	25	감)25	-							
	4-2	테크쉼터	-	25	감)25	-							
	4-3	테크쉼터	-	25	감)25	-							
	4-4	테크쉼터	-	25	감)25	-							
	4-5	테크쉼터	-	25	감)25	-							
	5	징검다리	조경시설	48	-	48							징검다리
	6	폭포	-	200	감)200	-							
소계				3,927	감)2,892	1,035							
휴양 시설	7-1	휴게공간	휴게소	351	-	351							
	7-2	휴게공간	휴게소	14	-	14							
	7-3	휴게공간	휴게소	12	-	12							
	7-4	휴게공간	휴게소	17	-	17							
	7-5	휴게공간	휴게소	14	-	14							
	7-6	휴게공간	-	707	감)707	-							
	7-7	휴게공간	휴게소	-	증)447	447							신설, 정자1개소
	7-8	휴게공간	휴게소	-	증)117	117							신설, 정자2개소
	7-9	휴게공간	휴게소	-	증)63	63							신설, 정자1개소
8	잔디광장	-	2,812	감)2,812	-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 시설	소계		581	감)581	-								
	9-1	체력 단련시설	-	430	감)430	-							
	9-2	체력 단련시설	-	151	감)151	-							
교양 시설	소계		15,735	감)1,160	14,575	160	감)160	-	160	감)160	-		
	10	참여놀이 조각공간	전시장	2,609	-	2,609							참여놀이 조각공간
	11	이벤트 전시공간	전시장	1,509	-	1,509							이벤트 전시공간
	12	추상조각 전시공간	전시장	2,358	-	2,358							추상조각 전시공간
	13	향토 민속조각	전시장	817	-	817							향토 민속조각
	14	전시공간	전시장	395	-	395							전시공간
	15	국제조각 전시공간	전시장	1,762	-	1,762							국제조각 전시공간
	16-1	구상조각 전시공간	전시장	1,519	-	1,519							구상조각 전시공간
	16-2	구상조각 전시공간	전시장	657	-	657							구상조각 전시공간
	17-1	야외무대	공연장	956	-	956							야외무대
	17-2	야외무대	공연장	1,403	-	1,403							야외무대
17-3	야외무대	공연장	590	-	590							야외무대	
18	운서정	-	1,160	감)1,160	-	160	감)160	-	160	감)160	-		
편의 시설	소계		618	-	618	50	-	50	50	-	50		
	19	화장실	화장실	110	-	110	50	-	50	50	-	50	
	20	주차장	주차장	508	-	508							
유희 시설	소계		1,642	감)1,642	-								
	21	무장애 놀이터	-	1,642	감)1,642	-							
공원 관리 시설	소계		-	-	-								
	22	방향 안내판	표지	-	-	-							방향안내판 10기→4기
	23	종합 안내판	표지	-	-	-							종합안내 판2기
	24	해설판	-	-	-	-							해설판 5기 → 0기
녹지	소계		154,897	감)85,484	69,413								
	녹지		154,897	감)85,484	69,413								

4.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봉황공원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총괄표

구분	소 로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2	감)22	10	6,141	감)4,514	1,627	18,333	감)15,135	3,198
1류	-	-	-	-	-	-	-	-	-
2류	-	-	-	-	-	-	-	-	-
3류	1	증)9	10	52	증)1,575	1,627	312	증)2,886	3,198
4류	29	감)29	-	5,843	감)5,843	-	17,529	감)17,529	-
5류	2	감)2	-	246	감)246	-	492	감)492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0개소				1,627	3,198			
폐지	소로	3	3	6	연결로	52	312	두곡리424-39	두곡리산94-4	
신설	소로	3	4	1.5	산책로	8	12	이도리산28-1	이도리산28-1	
폐지	소로	4	1	3	산책로	370	1,110	이도리879-1	이도리산50	
폐지	소로	4	2	3	산책로	410	1,230	이도리869-1	이도리산50	
폐지	소로	4	5	3	산책로	280	840	두곡리419-18	이도리산41-2	
폐지	소로	4	6	3	산책로	605	1,815	이도리산41-2	갈마리산102	
폐지	소로	4	7	3	산책로	185	555	두곡리419-32	두곡리산96-1	
폐지	소로	4	8	3	산책로	480	1,440	두곡리산94-4	두곡리423-1	
폐지	소로	4	9	3	산책로	120	360	두곡리산94-4	이도리산30-2	
기정	소로	4	10	3	산책로	26	78	이도리산30-2	이도리산30-2	
변경	소로	3	10	2	산책로	377	754	두곡리산94-9	두곡리423-1	
폐지	소로	4	11	3	산책로	120	360	이도리산30-2	두곡리423-1	
폐지	소로	4	12	3	산책로	64	192	두곡리424-3	두곡리산113-4	
폐지	소로	4	13	3	산책로	177	531	두곡리산113-4	두곡리산113-4	
폐지	소로	4	14	3	산책로	92	276	두곡리산113-4	두곡리산113-4	
폐지	소로	4	15	3	산책로	277	831	두곡리산113-4	두곡리산113-4	
폐지	소로	4	17	3	산책로	86	258	이도리산92-2	이도리924-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4	18	3	산책로	425	1,275	성가리산59-2	이도리산28-1	
변경	소로	3	18	2	산책로	737	1,474	두곡리424-1	이도리산28-1	
폐지	소로	4	19	3	산책로	5	15	이도리산28-1	이도리산28-1	
기정	소로	4	20	3	산책로	23	69	이도리산28-1	이도리산28-1	
변경	소로	3	20	2	산책로	32	65	이도리산28-1	이도리산28-1	
기정	소로	4	21	3	산책로	10	30	이도리산27-1	이도리산27-1	
변경	소로	3	21	1.7	산책로	19	33	이도리산27-1	이도리산27-1	
기정	소로	4	22	3	산책로	32	96	이도리산27-1	이도리산27-1	
변경	소로	3	22	2.4	산책로	59	142	이도리산27-1	이도리산27-1	
기정	소로	4	23	3	산책로	115	345	이도리산27-1	이도리산27-1	
변경	소로	3	23	2.4	산책로	125	299	이도리산28-1	이도리산28-1	
기정	소로	4	25	3	산책로	135	405	두곡리473	두곡리424-1	
변경	소로	3	25	2	산책로	30	59	두곡리597	두곡리424-1	
폐지	소로	4	26	3	산책로	211	633	이도리867-4	이도리151-27	
기정	소로	4	27	3	산책로	162	486	이도리산27-1	이도리산27-1	
변경	소로	3	27	1.5	산책로	159	239	이도리산27-1	이도리산27-1	
폐지	소로	4	28	3	산책로	90	270	이도리917-3	이도리154-32	
폐지	소로	4	29	3	산책로	416	1,248	이도리917-3	이도리산41-2	
폐지	소로	4	30	3	산책로	270	810	이도리151-22	이도리산45-1	
폐지	소로	4	31	3	산책로	312	936	이도리산98-1	이도리산48-1	
폐지	소로	4	32	3	산책로	60	180	이도리산98-6	이도리산99-2	
폐지	소로	4	33	3	산책로	285	855	이도리산99-2	이도리산103-2	
기정	소로	5	1	2	산책로	223	446	두곡리424-1	이도리819	
변경	소로	3	1	1.5	산책로	81	121	이도리924-1	이도리574-5	
폐지	소로	5	2	2	산책로	23	46	두곡리424-1	두곡리424-1	

나. 사선대공원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총괄표

구분	소 로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	감)4	34	4,426	감)1,287	3,139	11,689	감)2,952	8,737
1류	-	-	-	-	-	-	-	-	-
2류	-	-	-	-	-	-	-	-	-
3류	38	감)4	34	4,426	감)1,287	3,139	11,689	감)2,952	3,198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34개소				3,139	8,737			
기정	소로	3	4	4	연결로	104	416	덕천리 713-2	덕천리 산39-1	
변경	소로	3	4	4	연결로	41	122	덕천리 713-2	덕천리 산39-1	
폐지	소로	3	5	4	연결로	195	780	덕천리 산52-8	덕천리 산52-8	
기정	소로	3	6	3	산책로	912	2,736	덕천리 산40	덕천리 546-1	
변경	소로	3	6	3	산책로	518	1,554	덕천리 산40-2	덕천리 산39-1	
신설	소로	3	7	3	산책로	309	928	덕천리 산52-13	덕천리 550	
신설	소로	3	8	2.4	산책로	319	767	덕천리 산52-13	덕천리 550	
기정	소로	3	10	3	산책로	140	420	덕천리 산39-1	덕천리 732-2	
변경	소로	3	10	3	산책로	131	394	덕천리 산39-1	덕천리 732-2	
폐지	소로	3	13	2	산책로	56	112	덕천리 산39-1	덕천리 산39-1	
폐지	소로	3	14	2	산책로	29	58	덕천리 505	덕천리 510-1	
기정	소로	3	15	2.5	산책로	266	665	덕천리 505	덕천리 510-1	
기정	소로	3	16	2.5	산책로	26	65	덕천리 505	덕천리 496-6	
기정	소로	3	17	1.5	산책로	101	152	덕천리 496-6	덕천리 496-5	
기정	소로	3	18	2.5	산책로	151	377	덕천리 496-5	덕천리 732-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9	2	산책로	131	262	덕천리 496-5	덕천리 503	
기정	소로	3	20	3	산책로	7	21	덕천리 501-4	덕천리 501-4	
기정	소로	3	21	3	산책로	10	30	덕천리 503	덕천리 503	
기정	소로	3	22	3	산책로	145	435	덕천리 732-1	덕천리 498	
기정	소로	3	23	5	산책로	7	35	덕천리 502-2	덕천리 502-1	
기정	소로	3	24	5	산책로	7	35	덕천리 501-5	덕천리 501-1	
기정	소로	3	25	5	산책로	7	35	덕천리 498-1	덕천리 500	
기정	소로	3	26	4	산책로	16	64	덕천리 499-2	덕천리 499-1	
기정	소로	3	27	3	산책로	118	354	덕천리 495-1	덕천리 512	
기정	소로	3	28	4	산책로	104	416	덕천리 511-1	덕천리 496-5	
기정	소로	3	29	4	산책로	39	156	덕천리 496-5	덕천리 497	
기정	소로	3	30	3	산책로	43	129	덕천리 496-5	덕천리 497	
기정	소로	3	31	4	산책로	140	560	덕천리 510-1	덕천리 496-5	
기정	소로	3	32	4	산책로	79	316	덕천리 512	덕천리 511-2	
기정	소로	3	33	3	산책로	14	42	덕천리 512	덕천리 514	
기정	소로	3	34	2	산책로	108	216	덕천리 514	덕천리 511-1	
기정	소로	3	35	2	산책로	62	124	덕천리 510-1	덕천리 512	
기정	소로	3	36	2	산책로	40	80	덕천리 509	덕천리 27	
변경	소로	3	36	2	산책로	55	110	덕천리 509	덕천리 산37	
기정	소로	3	37	2	산책로	78	156	덕천리 510-1	덕천리 511-1	
기정	소로	3	38	2	산책로	8	16	덕천리 510-2	덕천리 510-2	
기정	소로	3	39	1.8	산책로	43	77	덕천리 507	덕천리 495-2	
기정	소로	3	40	1.5	산책로	9	13	덕천리 496-1	덕천리 495-2	
폐지	소로	3	41	2	산책로	126	252	덕천리 705-3	덕천리 705-15	
폐지	소로	3	42	2	산책로	281	562	덕천리 705-15	덕천리 731-11	
폐지	소로	3	43	2	산책로	304	608	덕천리 705-15	덕천리 52-9	
폐지	소로	3	44	2	산책로	208	416	덕천리 52-3	덕천리 551-5	
폐지	소로	3	45	2	산책로	58	116	덕천리 554	덕천리 38-2	
폐지	소로	3	46	1.5	산책로	254	381	덕천리 572-2	덕천리 546	
신설	소로	3	47	2.4	연결로	10	24	덕천리 551-6	덕천리 554	
신설	소로	3	48	2.4	산책로	13	31	덕천리 551-6	덕천리 551-4	
신설	소로	3	49	2.4	연결로	23	56	덕천리 551-6	덕천리 551-2	

고창군 고시 제2021-38호

고창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063-560-2953) 및 건설도시과(☎063-560-25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21년 3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2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창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2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 6,7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창군수,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 따로 붙임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읍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 계						6,757						
1	무장	성내	75	대	7,963	136	고창군					
2	"	"	76	전	804	13	고창군					
3	"	"	212-1	대	278	118	고창군					
4	"	"	212-2	도	33	29	김*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5	"	"	212-3	대	20	15	고창군					
6	"	"	213-1	대	264	33	고창군					
7	"	"	213-2	도	53	31	진*선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8	"	"	213-3	도	13	4	진*선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9	"	"	242	도	1,859	1,299	전라북도					
10	"	"	243-2	도	501	27	전라북도					
11	"	"	244	대	498	498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2	"	"	245	대	863	863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	"	"	246	전	648	270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4	"	"	247-1	대	161	161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	"	"	247-1	대	161	161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6	"	"	247-2	대	155	155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	"	"	247-3	대	205	205	김*래	고창군 무장면 성내길	선운산 농협 협동조 합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 성길		
18	"	"	247-4	대	177	177	유*중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 로				
19	"	"	247-1 5	대	107	107	라*이	고창군 무장면 강남덕산 길				

20	"	"	247-1 9	도	198	127	고창군					
21	"	"	247-2 0	도	41	17	고창군					
22	"	"	247-2 1	대	1	1	고창군					
23	"	"	248-1	대	60	60	고창군					
24	"	"	248-4	도	40	32	전라북도					
25	"	"	248-7	대	8	8	고창군					
26	"	"	249-1	도	13	13	국(건설 교통부)					
27	"	"	249-2	대	92	92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	"	"	249-3	도	56	56	고창군					
29	"	"	249-4	도	4	4	전라북도					
30	"	"	249-5	대	6	6	고창군					
31	"	"	250-1	도	50	50	국(건설 교통부)					
32	"	"	250-2	도	13	13	국(건설 부)					
33	"	"	250-3	대	270	270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4	"	"	250-4	대	142	142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5	"	"	250-5	도	76	76	국(건설 부)					
37	"	"	250-6	대	454	454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8	"	"	251-1	도	17	17	박*수					
39	"	"	252-1	도	56	17	고창군					
40	"	"	252-3	대	460	127	김*년					
41	"	"	252-4	대	106	106	김*년					
42			252-5	도	46	6	고창군					
43			252-6	도	33	33	고창군					
44			309	도	20,033	415	국(건설 부)					
45	"	"	309-8	대	22	22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6			309-9	대	7	7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			309-1 0	도	2	2	전라북도					
48			309-1 1	도	4	4	전라북도					
49	"	"	309-1 5	대	58	58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무장	성내	250-6	주택	목조강판	93.5 ㎡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다용도 실	조적합석	23.1 ㎡					
				창고	조적합석	4.0㎡					
				가추	파이프조 합석	20.3 ㎡					
				주택	목조합석	19.5 ㎡					
				창고	목조스레 트	6.0㎡					
				창고	목조스레 트	6.2㎡					
				창고	블록스레 트	5.5㎡					
				석유창 고	블록스레 트	16.8 ㎡					
				화장실	블록슬라 브	6.0㎡					
				바닥포 장		35.0 ㎡					
				장독대		1식					
				대문		2식					
				담장		127.5 m					
				굴뚝		1식					
				그물망 울		15.0 m					
				주목		119주					
				팽나무		2주					
				회양목		35주					
				백일홍		1주					
				벽오동		1주					
				대추나 무		3주					
				감나무		5주					
				동백나 무		2주					
				영산홍		2주					
				아로니 아		2주					
				향나무		2주					
				목련		2주					
				장미		1주					
				사철나 무		1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석류나무		1주						
				산드릅		1주						
				벗나무		5주						
				동백나무		5주						
				정원		1식						
				정원연못		1식						
2	무장	성내	250-4	작업장	파이프조강관	33.8 m ²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작업장	파이프조강관	20.7 m ²						
				사무실	조립식판넬	6.0m ²						
				문주		1식						
				웬스		16.0 m						
				장미		1주						
3	무장	성내	249-2	점포및 식당	경량철골 및 블록조합 석	166.7 m ²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창고	블럭판넬	8.1m ²						
				가추	파이프조강관	8.0m ²						
				장독대		1식						
				수도간		1식						
4	무장	성내	247-1 5	점포	경량철골 및 블록조판 넬	74.3 m ²	라*이	고창군 무장면 강남덕산 길				
				창고	블록스레 트	19.3 m ²						
				가추	판넬	14.4 m ²						
				사무실 및창고	조립식판 넬	7.4m ²						
				방 및 부엌	조적스레 트	17.0 m ²						
				바닥포 장		18m ²						
				저온저 창고		1식						
5	무장 면	성내 리	247-3	주택	연와조판 넬	94.1 m ²	김*례	고창군 무장면 성내길				
				다용도 실	조립식판 넬	21.6 m ²						
				보일러	조립식판	3.8m ²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실	넬							
				베란다	새시조판 넬	14.5 m ²						
				창고	조립식판 넬	18.0 m ²						
				가추	판넬	12.6 m ²						
				바닥포 장		28.5 m ²						
				수도간		1식						
6	무장	성내	247-4	음식점	경량철골 조판넬	139.8 m ²	유*중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 로				
				현관	조립식판 넬	2.0m ²						
7	무장	성내	247-1	사무실 및 창고	조적조합 석	72.0 m ²	박*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보일러 실및화 장실	조적조판 넬	4.0m ²						
				창고	조적조합 석	28.8 m ²						
				가추	합석	16.2 m ²						
				가추	목조스레 트	10.0 m ²						

전라북도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1-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 송달

소방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전주 덕진소방서장
2021년 3월 19일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2. 대 상 자
 - 성 명 : 강만석(생년월일 : 700310-1*****)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3길 **
3.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미신고
4.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545,000원(금오십사만오천원)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2. 대 상 자
 - 성 명 : 강등원(생년월일 : 610902-1*****)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2길 **
3. 위반내용 :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2호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800,000원(금팔십만원) / 2건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2. 대 상 자
 - 성 명 : 조기완(생년월일 : 640116-1*****)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
- 3. 위반내용 :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 4.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2호
-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2. 대 상 자
 - 성 명 : 전재권(생년월일 : 690413-1*****)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4길 **
- 3. 위반내용 :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 4. 위반법규 :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10조
-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2. 대 상 자
 - 성 명 : 이요한(생년월일 : 810223-1*****)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 3.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불참
- 4.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제2호
-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2. 대 상 자
 - 성 명 : 방문홍(생년월일 : -1*****)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03번길 **
- 3. 위반내용 : 지위승계 태만
- 4.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2. 대 상 자
 - 성 명 : 강태동(생년월일 : 650827-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5번길 **
- 3. 위반내용 :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 4. 위반법규 :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10조
-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2건
-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2. 대 상 자
 - 성 명 : 김진수(생년월일 : 701112-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96번길 **
- 3. 위반내용 : 지위승계 태만
- 4.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3,540,000원(금삼백오십사만원)
-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1. 압류대상 :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2. 대 상 자
 - 성 명 : 김경진(생년월일 : 740916-1*****)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20번길 **
3. 위반내용 : 지위승계 신고태만
4.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5. 부과금액 : 과태료 금531,000원(금오십삼만일천원)
6. 압류년월일 : 2021. 2. 23.
7. 압류해제방법 :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 시 압류해제
8. 납부방법 : 전주덕진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48611)
9.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50-4241)





원광여자중학교 공고 제2021-9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광여자중학교장
2021년 3월 19일

- 1. 사용개시일: 2021년 3월 22일
- 2. 등록 및 폐기 내역

재 등 록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학교장직인		
폐 기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학교장직인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